

청약한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확인(검증)을 위해 예비입주자 서류제출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기간 내 필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예비입주자 서류제출을 (빠른)등기우편 접수로 대신합니다.

- 서류제출 기한: 2021. 3. 26(금) ~ 3. 31(수)까지 등기우편 발송분에 한함. (문의: 1661-0069)
- 서류제출 주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손곡로 9, 더샵 오포센트리체 견본주택 (우편번호: 16827)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동,호수 배정 추첨 참가순번

타입	특별공급 예비 순번	타입	특별공급 예비 순번	타입	특별공급 예비 순번
59A	1번~30번	76A	1번~9번	84B	1번~21번
59B	1번~15번	76B	1번~18번	84C	1번~24번
59C	1번~30번	84A	1번~21번	84D	1번~42번

※ 예비입주자는 타입별 공급세대수의 300%(3배)가 선정되어 있지만, 잔여 세대가 많지 않아 예비입주자 추첨 참가 대상을 타입별 예상 잔여 세대수(3.26일 기준)의 3배수에 한하여 1차로 진행하며,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다음 순번 고객님들께 순차적으로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2.08.)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 ※ 서류제출 기한 내 관련서류 미제출 시 적격여부 확인이 불가하여 계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 예비입주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예비입주자 지위가 취소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불이익은 예비입주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 제출된 서류 외 사업주체는 보완 또는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별 안내 예정입니다. (※ 별도로 정한 기한 내 해당서류 미제출 시 계약불가)
-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등기우편 발송 시 빠른등기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기영수증은 보관 바랍니다.)
- ※ 서류제출 기간 내 견본주택 관람 및 방문 서류제출은 불가합니다.
- ※ 계약시 계약자(1인) 또는 대리인(1인)과 동반1인 입장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예비입주자 제출 서류

서류유형	필수	추가 (해당자)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변동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혼인신고일 확인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서	본인	• 국외 거주기간 여부 확인 (*출생년도부터 현재까지 기간지정으로 발급)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당첨자 및 성년자(만19세 이상 포함)인 세대원 전원 제출 (발급처: 국민건강보험 T.1577-1000) *분리된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된 배우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 필수
○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당첨자 및 성년자(만19세 이상 포함)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증빙서류 (아래표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 *분리된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된 배우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 필수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 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상기 본인 등본 발급 유의사항과 같이 '전체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 재혼가정의 자녀(본인의 친자녀가 아닌 자녀)가 당첨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주민등록표등본 상 당첨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국내의료기관으로 한정) 제출 *임신진단서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임신확인서' 인정 안됨)
○			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			복합확인서	본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 대상으로 청약 신청한 경우 군복무기간(10년 이상) 명시
○			해외근무자(단신부임) 증명서류	본인	• 당첨자 본인만(혼자)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국외에 체류한 경우로서 해당 해외 체류 기간을 국내체류 기간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아래표 '해외근무자(단신부임) 증명서류' 참조]
○			사업주체가 필요 시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	해당서류	• 무주택 소명서류: 주택소유 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 기준'에 따른 해당 서류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서 정하는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기타 증명 서류(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축물확인서 등) ※ 특별공급의 경우 제53조제9호 미적용: '소형-저가주택등' 1호 또는 1세대만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유주택자에 해당 ※ 당첨자 및 세대원의 소유 주택 현황 사레가 다양하여 사업주체가 추가로 증빙을 요구하는 서류 • 당첨사실 소명서류: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호 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인정 서류

해외근무자(단신부임) 증빙서류 (해당 당첨자)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확인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		해외근무 증빙서류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기업 및 기관 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근로자가 아닌 경우(※반드시 제출) : ①비자 발급내역 ②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
○		출입국사실증명서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우자 및 세대원이 생업 등으로 해외 체류 여부 확인 (*출생년도부터 현재까지 기간지정으로 발급)
	○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본인 및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당첨자(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계속하여 90일, 연간 183일을 초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당첨자 및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는 성년자(만19세 이상)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직증명서(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기 전에 특별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직장 세무서
	금년도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직증명서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직증명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 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급여액 및 근무 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 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서(근로소득지급조서)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서에 사업자의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사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명원(*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증명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무서
	신규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및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분) 사업자등록증 사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연금공단 세무서
	법인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무서 등기소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해당 회사의 급여명세서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무서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복지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서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및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직장 국민연금공단 	
무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입증서류 제출 대상자 중 무직자는 서류제출 시 해당자가 무직자임을 사업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해 주시기 바람. (*주민등록표등본 상 연필로 대상자에 '무직자' 로 표시) 		

※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는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관계 및 주소변경 이력이 표기 되도록 ‘전체포함’ 또는 ‘상세’로 발급

※ 구비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 계약 불가